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999年 5月 28 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회부경위

가.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 5월 15일 평창군수
- 수정예산안 : 1999년 5월 24일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추가경정예산안 : 1999년 5월 24일
- 수정예산안 : 1999년 5월 24일

다. 상정일자

- 추가경정예산안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 5. 24상정)
- 수정예산안 : 제2차 " (1999. 5. 25 상정)
-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9. 5. 26 의결)

### 3.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부군수 김재군)

#### 가. 제안이유

-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순세계잉여금등의 조정과 시책추진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19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은

-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170백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0,01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877백만원이 특별회계는 135백만원이 증가한 7,531백만원임.

##### - 세입예산은

- 일반회계가 지방세 7백만원, 세외수입 6,520백만원, 지방교부세 381백만원, 지방양여금 131백만원, 국도비보조금이 2,83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135백만원이 감소하였고, 도비보조금 270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 세출예산은

- 일반회계가 경상예산 2,136백만원, 사업예산 7,148백만원 채무상환 2백만원, 예비비등 591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경상예산 14백만원, 사업예산 199백만원, 예비비등 1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채무상환은 7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허해성)

가.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당초예산안 성립이후 발생한 국도비 변경내시분 및 순세계잉여금등의 조정과 시책 추진 필수경비의 반영을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의 증감을 반영한 것으로 총 931억 6,993만원으로 기정예산 831억 5,781만원 대비 12%인 100억 1,212만원이 증액되었음.

### 나. 일반회계

#### ○ 세입부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98억 7,704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700만원, 세외수입은 65억 2,000만원 각각 증액되었고
- 지방교부세는 3억 8,100만원, 지방양여금은 1억 3,100만원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17억 2,716만원, 도비보조금 11억 1,0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음.

#### ○ 세출부분

- 일반회계 세출예산도 세입규모와 같은 98억 7,704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중 인건비, 경상적경비의 경상 예산은 21억 3,620만원이 국도비보조, 지방양여금, 자체 사업등 사업예산은 71억 4,853만원, 채무상환은 170만원, 예비비등은 5억 9,061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 일반행정비는 총 21억 56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 예산 179억 3,292만원 대비 11.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사회개발비는 총 42억 837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 예산 225억 4,679만원대비 18.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 경제개발비는 농수산개발,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교통관리등에 총 29억 1,2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 334억 400만원대비 8.7%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고,
- 민방위비는 총 5,8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기정예산 3억 3,700만원대비 17.1%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지원 및 기타경비는 5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지방채상환은 큰 변동이 없고 대부분 국도비보조에 대한 예산집행 반환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비비는 7억 8,790만원으로서 예비비 확보기준인 1%에 못미친 0.92%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나. 특별회계

### ○ 세입·세출부분

-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7개 사업에 1억 3,500만원 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8%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음

## 5. 질의및 답변요지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 공유재산임대 수입의 증가요인은?	○ 자가상승에 따른 인상분임.
2. '99가을착수 받기반정비 예산액이 삭감된 이유는?	○ 국도비 보조 삭감이 그 원인임.
3. 민원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국비 지원인지?	○ '98 민원분야 전국 최우수상 획득에 대한 상사업비임.
4. 직장체육대회 참가보상에 대하여?	○ 강원도 태백곰기 테니스대회등 직원이 군청을 대표로 참가하는데 필요한 출전비임.
5. 효석 문학공원의 추진공정은?	○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음.
6. 해피700 평창초원영화제 지원에 대하여?	○ 춘사 나운규 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바탕으로 군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음.
7. 동굴개발계획 용역이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 용역사실은 전혀없다
8. 관광홍보 영상물 제작에 대하여?	○ 입체적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계획은 없음.
9. 해피700 평창초원영화제 및 카레이싱 랠리대회는 정례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 집행부는 정례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10. 직장레슬링부 운영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는?	○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임.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11. 장애인복지관 작업장 마무리 사업이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에서 삭감한 이유는?	○ 추가시설비가 40,000만원이 필요한데 계상금액은 2,000만원이 계상되어 삭감후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임.
12. 도암·방림쓰레기매립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 본 사업은 쓰레기매립장 설치시 주민과 협약한 사항임.
13. 장수식당운영에 따른 지원예산 50%를 삭감하였는데 삭감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 전혀 지장이 없음
14. 산림사업비가 대부분 감액되었는데 사업물량은 변동이 없는지?	○ 인건비 단비조정으로 인하여 줄었지만 사업물량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15. 의료원 증·개축 보수에 관하여?	○ 의료원보건 체제를 일반병원과 같은 수준으로 할 계획임.

## 6. 검토요지

- 가.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인건비, 경상적경비등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은 원칙없는 예산편성임.
- 나. 의회의 예산승인도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예산을 집행한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의결권을 위배한 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임.
- 다. 예산편성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는 것은 인정하나 예산을 수정할 수 있는 것은 의회의 권한으로서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의회와 의견교환으로 이해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7. 수정안요지

### 가. 수정이유

-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성과가 불확실하거나 현실성이 없는 예산, 투자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예산은 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삭감조치

### 나. 수정주요골자

-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행정비 HAPPY 700세미나 개최지원 10,000천원, 고향을 빛낸인사 인증패제작 10,000천원, 사회

개발비중 남은 음식물 싸주기 지원 용기구입 3,300천원, 경제 개발비중 새농어촌건설운동시책사업추진 100,000천원, 평창 한우수출용거세장려금 30,000천원등 총 153,300천원을 삭감 하여 예비비에 편성.

## 8. 심 사 결 과

- 일반회계 : 원안에 대하여 수정안 의결
- 특별회계 : 원안의결

## 9. 소수의견의 요지

- 가. 지방재정의 주요기능과 정확한 투자원칙 없는 예산편성은 예산사장과 재원배분기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임.
- 나. 구조조정으로 인한 불안심리와 낮은 보수체제하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 세계의 현실속에서 정원에 포함 되는 계약직 공무원을 구지 채용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감
- 다. 용평 속사·백옥표 저온저장고 부실공사에 대하여는 '98 상·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통하여 대책을 요구하였 음에도 현재까지 뚜렷한 대책없이 방치한 것은 행정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됨.
- 라.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이 몇일도 안되어 추가비용 부담을 이유로 수정예산에 삭감편성된 것은 여건변화에 의문이 제기됨.

- 마. 군정홍보 예산이 체계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고 행사성 및 1회성 소비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음.
- 바. '99년도 당초예산 승인시 의회는 직장체육부 존립에는 이견이 없으나 선수계열화가 안되고 지역여건에 맞지 않으며 도민 체전만을 위하여 유지되고 있는 직장 레슬링부에 대하여 6개월 기간동안 집행부의 확실한 대안을 제시토록 요구하였음에도 제시하지 않고 금번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이해와 설득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됨.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

첨부 : 1999년도 제1회 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수정안 1부.

##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 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 1. 예산총칙 수정

#### ○ 제1조

(단위:천원)

회 계 명	지방자치단체제출 예산액	수정예산액	증 감
계	93,183,908	93,183,908	-
일반회계	85,653,092	85,653,092	-
특별회계	7,530,816	7,530,816	

○ 제2조 ~ 6조 : 변동사항 없음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941,200천원으로 한다.

### 2. 예산수정의결 내역

#### 가. 세입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93,183,908	-	-	93,183,908	
일반회계	85,653,092	-	-	85,653,092	
특별회계	7,530,816	-	-	7,530,816	

## 나. 세출총괄

(단위:천원)

회 계 별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비 고
		감 액	증 액		
계	93,183,908	153,300	153,300	93,183,908	
일반회계	85,653,092	153,300	153,300	85,653,092	
특별회계	7,530,816	-	-	7,530,816	

### ○ 일반회계 세출

과 목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계			85,653,092	153,300	153,300	85,653,092	
1000 일반행정비			20,045,527	20,000	-	20,025,527	
1200 일반행정비			19,507,845	20,000	-	19,487,845	
	1210	기획관리	10,550,781	10,000	-	10,540,781	
		1211 기획관리	147,100	10,000	-	137,100	○HAPPY700세미나개최지원 △10,000
	1240	내무행정	6,753,362	10,000	-	6,743,362	
		1245 일선행정 조직운영	599,075	10,000	-	589,075	○고향을빛낸인사 인증패 제작△10,000
2000 사회개발비			26,734,167	3,300		26,730,867	
2200 보건및생활환경개선			11,741,520	3,300		11,738,220	
	2210	보건	5,116,095	3,300		5,112,795	
		2214 위생관리	12,760	3,300		9,460	○ [남은 음식물 싸주기] 지원 용기구입△3,300

과 목			지방자치단체 제출 예산액	수 정		수정예산액	수정사유 및 내역
관	항	세항		감 액	증 액		
3000 경제개발비			36,345,291	130,000		36,215,291	
3100 농수산개발비			15,373,812	130,000		15,243,812	
	3110 농정관리		13,865,991	100,000		13,765,991	
		3111 농업정책	2,358,731	100,000		2,258,731	○새농어촌건설운동시책 사업추진 △100,000
	3120 축수산진흥		489,958	30,000		459,958	
		3121 축산행정	478,458	30,000		448,458	○평창한우수출용거세장려 금△ 30,000

# 1999년도제1회평창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의안 번호	33
----------	----

제출년월일 : '99. 5.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 1. 제 안 이 유

1999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보조금의 변경통보에 따른 조정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편성 군의회의 승인을 받으려 하는 것임

## 2. 주 요 골 자

가. 1999년도 제1회 평창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184백만원으로 기제출 예산대비 14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본 증가액은 일반회계로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음

### 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중 수수료수입 20백만원과 국고보조금 59백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보조금 93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을 15백만원 증액하였고, 사업예산은 1백만원을 감액 하였음.

# 관계법령발췌서

## □ 지방자치법 제118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년도개시 50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년도개시 40일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예산안을 시·도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5일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서는 회계년도개시 1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수정 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지방자치법 제121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② 제11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예 산 총 칙

1999년도 (1회추경수정)

\* 제1조 :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	계	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총	계	계	93,183,908	2,795,513
일	반	회	85,653,092	2,569,592
특	별	회	7,530,816	225,921
	상수도특별회계	계	4,731,411	141,942
	주택사업특별회계	계	637,337	19,120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계	1,486,232	44,586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계	436,531	13,095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계	158,376	4,751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계	45,008	1,350
	주차장특별회계	계	35,921	1,077

\* 제2조 :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 제3조 : 1999년도 채무부담행위는 없다.

\* 제4조 : 1999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000백만원으로 한다.

\* 제5조 : 1999년도 명시이월사업은 없다.

\* 제6조 : 999년도 계속비사업은 변동이 없다.

\* 제7조 : 일반회계 예비비는 787,900천원으로 한다.

#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 경제성질별 ]

(단위 : 천원)

구분	합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수정 예산액	구성 비율 %	기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감	수정 예산액	구성 비율 %	기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감	수정 예산액	구성 비율 %	기정 예산액	구성 비율 %	증△감	
세입	계	93,183,908	100	93,169,936	100	13,972	85,653,092	100	85,639,120	100	13,972	7,530,816	100	7,530,816	100	0
	지방세수입	9,634,743	10	9,634,743	10	0	9,634,743	11	9,634,743	11	0	0	0	0	0	0
	세외수입	23,512,282	25	23,532,282	25	△20,000	18,581,091	22	18,601,091	22	△20,000	4,931,191	65	4,931,191	65	0
	경상적세외수입	9,256,157	10	9,276,157	10	△20,000	7,334,117	9	7,354,117	9	△20,000	1,922,040	26	1,922,040	26	0
	임시적세외수입	14,256,125	15	14,256,125	15	0	11,246,974	13	11,246,974	13	0	3,009,151	40	3,009,151	40	0
	지방교부세	29,137,000	31	29,137,000	31	0	29,137,000	34	29,137,000	34	0	0	0	0	0	0
	지방양여금	7,765,435	8	7,765,435	8	0	7,765,435	9	7,765,435	9	0	0	0	0	0	0
	보조금	22,134,448	24	22,100,476	24	33,972	20,534,823	24	20,500,851	24	33,972	1,599,625	21	1,599,625	21	0
	국고보조금	15,250,328	16	15,308,956	16	△58,628	14,089,337	16	14,147,965	17	△58,628	1,160,991	15	1,160,991	15	0
	도비보조금	6,884,120	7	6,791,520	7	92,600	6,445,486	8	6,352,886	7	92,600	438,634	6	438,634	6	0
지방채	1,000,000	1	1,000,000	1	0	0	0	0	0	0	1,000,000	13	1,000,000	13	0	
세출	계	93,183,908	100	93,169,936	100	13,972	85,653,092	100	85,639,120	100	13,972	7,530,816	100	7,530,816	100	0
	인건비	13,353,062	14	13,353,062	14	0	13,335,081	16	13,335,081	16	0	17,981	0	17,981	0	0
	물건비	11,609,403	12	11,580,303	12	29,100	11,222,964	13	11,193,864	13	29,100	386,439	5	386,439	5	0
	이전경비	12,906,912	14	12,900,912	14	6,000	10,374,058	12	10,368,058	12	6,000	2,532,854	34	2,532,854	34	0
	자본지출	50,552,723	54	50,573,851	54	△21,128	47,223,153	55	47,244,281	55	△21,128	3,329,570	44	3,329,570	44	0
	융자및출자	441,784	0	441,784	0	0	0	0	0	0	0	441,784	6	441,784	6	0
	보전재원	1,393,060	1	1,393,060	1	0	628,651	1	628,651	1	0	764,409	10	764,409	10	0
내부거래	1,471,592	2	1,471,592	2	0	1,471,592	2	1,471,592	2	0	0	0	0	0	0	
예비비및기타	1,455,372	2	1,455,372	2	0	1,397,593	2	1,397,593	2	0	57,779	1	57,779	1	0	

#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 세 세 항 별 ]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수 정 예산액	구 성 비율 %	기 정 예산액	구 성 비율 %	증△감	수 정 예산액	구 성 비율 %	기 정 예산액	구 성 비율 %	증△감	수 정 예산액	구 성 비율 %	기 정 예산액	구 성 비율 %	증△감
세	계	93,183,908	100	93,169,936	100	13,972	85,653,092	100	85,639,120	100	13,972	7,530,816	100	7,530,816	100	0
	경 상 예 산	28,466,527	31	28,451,427	31	15,100	28,086,907	33	28,071,807	33	15,100	379,620	5	379,620	5	0
	인 건 비	13,353,062	14	13,353,062	14	0	13,335,081	16	13,335,081	16	0	17,981	0	17,981	0	0
	경 상 적 경 비	15,113,465	16	15,098,365	14	15,100	14,751,826	17	14,736,726	17	15,100	361,639	5	361,639	5	0
	사 업 예 산	58,716,092	63	58,717,220	63	△1,128	53,475,952	62	53,477,080	62	△1,128	5,240,140	70	5,240,140	70	0
	보 조 사 업	39,530,116	42	39,580,244	42	△50,128	37,488,279	44	37,538,407	44	△50,128	2,041,837	27	2,041,837	27	0
	자 체 사 업	19,185,976	21	19,136,976	21	49,000	15,987,673	19	15,938,673	19	49,000	3,198,303	42	3,198,303	42	0
	채 무 상 환	2,588,136	3	2,588,136	3	0	734,859	1	734,859	1	0	1,853,277	25	1,853,277	25	0
	지방채상환	2,588,136	3	2,588,136	3	0	734,859	1	734,859	1	0	1,853,277	25	1,853,277	25	0
	채무부담행위상환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출	예 비 비 등	3,413,153	4	3,413,153	4	0	3,355,374	4	3,355,374	4	0	57,779	1	57,779	1	0
	예 비 비	824,498	1	824,498	1	0	787,900	1	787,900	1	0	36,598	0	36,598	0	0
	기 타	2,588,655	3	2,588,655	3	0	2,567,474	3	2,567,474	3	0	21,181	0	21,181	0	0